

2024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

2024년 01월 01일 부터 보건복지부 급여비용 산정방법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비용 노인요양시설 수가가 아래와 같이 인상적용(3.04%) 됨을 알려 드립니다.

아울러 비급여항목(간식, 침실료)은 동결하였으나 식사비는 끼니당 200원 상향된 4,00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.

[시설이용료 자부담 산출내역]

* 원단위 절사

구 분		1일당 수가(100%)	30일 기준	
1 등 급	1일당 수가	84,240	본인부담액	본인부담총액(식대, 간식포함)
	본인부담액 (20%)	16,848	505,440	913,440
	본인부담액 (12%)	10,109	303,264	711,264
	본인부담액 (8%)	6,739	202,176	610,176
	비급여 (식대, 간식)	13,600	408,000	

2 등 급	1일당 수가	78,150	본인부담액	본인부담총액(식대, 간식포함)
	본인부담액 (20%)	15,630	468,900	876,900
	본인부담액 (12%)	9,378	281,340	689,340
	본인부담액 (8%)	6,252	187,560	595,560
	비급여 (식대, 간식)	13,600	408,000	

3 등 급	1일당 수가	73,800	본인부담액	본인부담총액(식대, 간식포함)
	본인부담액 (20%)	14,760	442,800	850,800
	본인부담액 (12%)	8,856	265,680	673,680
	본인부담액 (8%)	5,904	177,120	585,120
	비급여 (식대, 간식)	13,600	408,000	

※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외박을 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50%를 산정합니다.

(1회당 최대 10일, 1개월에 15일까지만 적용됩니다)

[비급여 자부담 산출내역]

비급여 (필수항목)	비 고
식사비용 12,000원 (1일)	1일 3회 제공 (4,000원 * 3식)
간식비용 1,600원 (1일)	1일 2회 제공 (800원 * 2회)
1 인 실 150,000원 (30일 기준)	1일 5,000원
2 인 실 90,000원 (30일 기준)	1일 3,000원

■ 급여종류별 본인일부부담금 부담비율

(2018.8.1.기준)

급여종류	일반	40% 감경자* 본인부담금의 할인비율	60% 감경자**	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상의료급여자
재가급여	15%	9%	6%	면제
복지용구(기타 재가급여)		전체수가의 지불비율		
시설급여	20%	12%	8%	
촉탁의 진찰비용				
의사소견서 발급비용	20%	10%		
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				

* 보험료감경대상자(보험료순위 25%초과 50%이하인자)

** 의료급여자, 차상위감경대상자,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, 보험료감경대상자(보험료순위 25%이하인자)

촉탁의 본인부담금

구 분		수급자 본인부담금			
		일반 (20%)	감경대상자 (8% / 12%)	타 법령에 따른 의료급여(8%)	기초생활 수급자 (0%)
`22년	초진 (16,970)	3,390	1,350 / 2,030	1,350	0
	재진 (12,130)	2,420	970 / 1,450	970	0
`21년	초진 (16,480)	3,290	1,310 / 1,970	1,310	0
	재진 (11,780)	2,350	940 / 1,410	940	0
'20년	초진 (16,140)	3,220	1,290 / 1,930	1,290	0
	재진 (11,540)	2,300	920 / 1,380	920	0
'19년	초진 (15,690)	3,130	1,250 / 1,880	1,250	0
	재진 (11,210)	2,240	890 / 1,340	890	0